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 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2000. 8. 28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2000년 8월 10일 제출
- 회 부 : 2000년 8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(2000. 1. 28. 법률 제6,216호)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할·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,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임.

5. 검토의견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(2000.1.28 법률 제6,216호)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할·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사국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